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8

2022. 10. 21.(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유상용 의원 등 10명

나. 제출일자 : 2022년 10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0월 17일

-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봉순 의원)

가. 제안사유

○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안 제3조)

○ 공공심야약국 지원(안 제4조)

○ 공공심야약국 홍보 및 관리(안 제5조～안 제6조)

○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안 제7조～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충북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 제정의 법률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약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 강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제3항 및 제4항**[1]을 들 수 있음.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대한약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안으로,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1)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부실로 환자 안전 문제 노출

-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2년 11월 15일부터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2]으로 정의하고 **24시간 편의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 충북도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 1,347개소

- 이에 일부 의약품 접근성은 향상되었지만,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결과(2018)에 따르면, 소비자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 구매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문제 노출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환자안전문제 : 용법용량 및 효능효과 미인지(17%), 사용기간 미확인(33%), 주의사항 미인지(38%)

  ※ 약사법 위반(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주의사항 미 게시, 미교육 종업원에 의한 판매 등) : 86%

- 아직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 도민의 응급 의약품 필요상황에 대응하기는 부족함.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2) 안전상비약품 종류 **(13개 품목)**

효능군(품목수)	품목명
해열진통제(5)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2)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4)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2)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2) **충북도 내 자율 심야약국 운영 미흡**

- 정부에서는 야간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의 경우 동 시간대의 수가에 대해 평일 18시~ 익일 09시,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30%를 가산(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북도 내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심야약국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청주(8)[3], 충주(3), 증평(1)에 불과함.
  이 또한 법적 근거 및 강제조항 없이 약국에서 관계 병원의 진료시간 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대부분 23시에 종료되는 등, 운영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61개 약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충북도 내 약국 4개소(청주1, 충주1, 제천1, 진천1)가 시범 대상에 포함되어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에 있음.

<충청북도 내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개요>
- 실시기간 : 2022. 7. ~ 12.
- 실시시군 : 4개소(청주 1, 충주 1, 제천 1, 진천 1)
- 운영시간 : 22시 ~ 익일 1시(3H)
- 지원내용 : 인건비(시간당 3만원), 홍보비, 설문조사 홍보비(1회) 등

○ 아직까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약료공백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상황은 아니지만, 충북의 경우 약국의 야간, 심야시간대 운영이 미흡함.

- 따라서 공공심야약국의 확대는 충북도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3) 청주 8개 자율 운영 심야약국 중 메디팜큰사랑약국(용암동)은 기존 24시간 자율 운영 중인 심야약국이면서 올해 7월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포함됨.

○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12개 시·도에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역 내 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전국 시·도별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 (2022. 7. 기준)>

시도명	참여약국 수 (2022년)			
	자치단체지원(114개소)			복지부 지원* (61개소)
	개소수	운영시간	지원내용	개소수
충청북도	-	-	-	**4개소**
서울특별시	34개소	22시~익일 01시	- **(사업비)** 1,535,000천원 (서울시 100%) - **(단 가) 2.6만원~4만원/시간** * 판매건수에 비례해 운영비 지원	-
부산광역시	4개소	22시~24시	- **(사업비)** 92,600천원 (부산시 100%) - **(단 가) 3만원/시간**	8개소
대구광역시	**심야** 1개소 **자정** 1개소 **365** 11개소	22시~익일6시 21시~24시 09시~20시	- **(사업비)** 200,000천원 (대구시 100%) - **(단 가) 2.4만원~2.5만원/시간**	-
인천광역시	15개소	22시~익일 01시	- **(사업비)** 374,100천원 (인천시 50%, 시군구 50%) - **(단 가) 3만원/시간**	-
광주광역시	5개소	22시~익일 01시	- **(사업비)** 168,000천원 (광주시 100%) - **(단 가) 3만원/시간**	-
대전광역시	2개소	22시~익일 01시	- **(사업비)** 109,000천원 (대전시 100%) - **(단 가) 3만원/시간**	2개소
울산광역시	1개소	22시~익일 02시	- **(사업비)** 45,000천원 (울산시 100%) - **(단 가) 3만원/시간**	1개소
세종특별자치시	-	-	-	2개소
경기도	20개소	22시~익일 01시	- **(사업비)** 690,000천원 (경기도 30%, 시군구 70%) - **(단 가) 3만원/시간**	19개소
강원도	-	-	-	4개소
충청남도	4개소 (천안시)	22시~익일 01시	- **(사업비)** 65,700천원 (천안시 100%) - **(단 가) 3만원/시간**	5개소
전라북도	-	-	-	5개소
전라남도	4개소	22시~24시	- **(사업비)** 131,400천원 (전남 30%, 시군 70%) - **(단 가) 5만원/시간**	2개소
경상북도	-	-	-	7개소
경상남도	5개소	22시~24시 (진주시만 21시~23시)	- **(사업비)** 127,750천원 (경남 100%) - **(단 가) 3.5만원/시간**	2개소
제주특별자치도	7개소	읍·면 20시~23시 동 22시~24시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사업비)** 134,000천원 (제주 100%) - **(단 가) 2.7만원/시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인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약국”으로 정의하였음.

○ 안 제3조 및 제4조는, 도지사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해당 사업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안 제5조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홍보와 관련해서는 도 및 시·군 차원의 별도 홍보 외에,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이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 중인 E-gen(www.e-gen.or.kr)을 통해 약국 운영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연 2회 이상 이용실태의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감독에 대해 규정하였고,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는 보조금의 관리 해이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근거로서 타당함.

○ 안 제9조는, 시·군 및 지역 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공공심야약국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함.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충북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보건의료기본법」 등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 다만, 공공심야약국 지정 제도를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주도의 경우, 읍면지역에서는 나홀로 약사들의 업무 부담에 따른 기피 등으로 참여 약국수가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제주도 공공심야약국 개소수 : 12곳('17) → 5곳('18) → 7곳('22)

- 충북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나 자율 운영 심야약국이 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 내 군지역의 경우 참여약국의 확보나 심야시간 및 공휴일 근무 약사 공급의 어려움 등으로 조례 제정 이후 오히려 지역 간 약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

-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때, 상기의 우려 점을 면밀히 검토·감안하여 충북도 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 정 안 요 지

가. 수정이유

○ 문구 해석상, 단체장의 재량권 과다로의 오해 소지 해소

나. 수정 주요내용

○ 도지사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시,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토록 규정(안 제3조제1항)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수정안 포함)」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8

제안연월일 : 2022년 10월 17일
제 안 자 : 안치영 의원 등

가. 수정이유

○ 공공심야약국 지정 관련 문구의 해석에 있어, 도지사의 재량권 과다로 오해 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내용

○ 도지사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시,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토록 규정 (안 제3조제1항)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심야시간·공휴일에 충청북도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심야시간·공휴일에 충청북도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심야시간·공휴일에 충청북도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홍보)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이용 실태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취소)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도지사가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제6조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지역 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 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 · 계단 ·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헌법불합치,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2027년까지 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운영(공휴일 포함)하고, **근무약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여 **운영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나. 추계 결과 : **1,018백만원(도비 100%)**

-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3년 66백만원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018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 출	66	131	230	230	361	1,018

- **산출내역** : **시간당 30천원 x 3시간/일 x 365일 x 4개소 = 131,400천원**
  - **1차년도(2023년)**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함
  - **3차년도(2025년)**부터 수요를 감안하여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산정함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지원 개소수	4	4	7	7	11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65,700**	**131,400**	**229,950**	**229,950**	**361,350**	**1,018,350**
공공심야약국 지원 (도비100%)		65,700	131,400	229,950	229,950	361,350	1,018,450
재원 조달		65,700	131,400	229,950	229,950	361,350	1,018,350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65,700	131,400	229,950	229,950	361,350	1,018,350
	지방세	65,700	131,400	229,950	229,950	361,350	1,018,3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